

증치세법 보충 문건 해설 (二):

과세범위, 우대혜택 정책 연계, 판매액

계산, 소규모납세인 과세기준점 등 방면에

대한 명확화

2026.02

Issue 2

개요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¹(이하 “증치세법”이라 함)이 시행됨에 따라 증치세 세제 개혁은 전면 구현 및 세부 개선의 핵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연합하여 일련의 신규 증치세법 보충 문건을 집중적으로 발표했으며, 정책 측면 및 징수관리 측면에서 증치세의 여러 주요 난제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증치세법 원칙 규정을 보다 세분화한 것이면서, 동시에 현행 증치세 징수관리 실무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고 최적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납세인이 관련 내용을 한층 더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Newsflash에서는 증치세 과세범위, 우대혜택 정책 연계, 판매액 계산, 소규모납세인 과세기준점과 관련된 중요 보충 문건의 핵심 내용과 실무 영향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

一、중요 보충 문건의 핵심 요약

보충 문건	문건 개요
<p>《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일반납세인 등기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² (국가세무총국 공고[2026]2 호)(이하 "2 호 공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인 및 적격 비기업 단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치세 납세인이 연속으로 12 개월 또는 4 분기를 초과하지 않은 경영기간 동안 누적 부과해야 할 증치세 판매액이 500 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납세인 등기를 처리해야 함. ✓ 납세인이 자체 보충 또는 정정, 리스크 관리 및 조사, 세무조사에 따른 추정 등 이유로 조정된 판매액은 납세의무 발생시점 기준으로 해당 세금 귀속기간의 판매액으로 처리해야 함. ✓ 일반납세인 발효일 및 일반납세인 등기 절차 완료의 기간 요건을 명확히 함.
<p>《재정부, 세무총국의 구체적인 증치세 과세범위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³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6]9 호) (이하 "9 호 공고")</p>	<p>구체적인 증치세 과세범위를 명확히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 증치세 세율 적용 대상 화물의 범위 ✓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판매 주석
<p>《재정부, 세무총국의 증치세법 시행 이후 증치세 우대혜택 정책 연계 사항에 관한 공고》⁴(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6]10 호)(이하 "10 호 공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납세인의 증치세 과세기준점, 증치세 면세 항목, 간이과세방법에 따른 저율(3%, 5% 또는 보다 낮은 징수율) 과세 항목, 차액과세 적용 범위, 증치세 즉시징수·즉시환급 정책, 우대혜택 항목 연장 등 증치세 우대혜택 정책의 연속성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함. ✓ 오랫동안 증치세 관련 정책 문건이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었는데, 10 호 공고는 증치세법 시행 전 세수우대혜택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 및 조정을 했고, "장기 유효, 기한부 유지(시행 기간: 2026 년 1 월 1 일 - 2027 년 12 월 31 일), 직접 취소"의 3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10 호 공고에서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현재 유효한 증치세 우대혜택 정책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2025 년 12 월 31 일 전에 문건 규정이 제정되었지만 동 열거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내판매 거래의 증치세 우대혜택 정책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국가세무총국의 과세기준점 표준 등 증치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 ⁵ (국가세무총국 공고[2026]4 호)(이하 "4 호 공고")	징수관리 문건의 보충 문건으로서 소규모납세인의 증치세 과세기준점 관련 징수관리 사항을 명확히 함.
《재정부, 세무총국의 증치세 과세거래 판매액 계산 기준 명확화에 관한 공고》 ⁶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6] 12 호)(이하 "12 호 공고")	특정 과세거래에 대해 차액 기준으로 판매액을 계산한다는 정책을 명확히 함.

二、구체적인 증치세 과세 범위

9 호 공고의 두 부록은 증치세법 시행 이후 과세범위의 명확한 근거로서 전체적으로 "연장 + 규범"을 위주로 합니다.

부록 1 《9% 증치세 세율 적용 대상 화물 범위 주식》은 20 가지 화물 범위에 대해 주석을 제공했고, 세부 설명 방면에서 개선 및 최적화를 하는 동시에 농산물, 식물성 식용유, 사료, 농기계 등 여러 가지 9% 세율을 적용한 화물 범위에 대해 일부 조정하고 명확히 했습니다.

부록 2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판매 주식》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공·수리·수선 서비스", "현대서비스"와 "생활서비스"를 "생산 및 생활서비스"로 통합했습니다.
- "전기통신서비스"의 내용을 조정했고, "모바일데이터 서비스, 문자 메시지와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기초전기통신서비스"에 포함시켰습니다.
- "화물운송대행서비스"의 정의를 수정하고 "처리 대행"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 "무형자산 판매"의 정의를 확대시키고 보충조항인 "기타 권익성 무형자산"을 "기타 무형자산"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무형자산"의 포괄 범위에 대해 "실물 형태를 갖추지 않지만 경제적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타 자산"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적용 범위(예: 디지털 자산 등)를 확대시켰습니다.

- 《택배 서비스 등 증치세 정책 명확화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5]5 호) 하의 택배 서비스에 대한 정의 및 택배 기업이 제공하는 택배 서비스에 대해 수취배송서비스(收派服务)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한다는 처리를 유지했습니다.

三、소규모납세인의 건별 납세 증치세 과세기준점 인상

10 호 공고는 기존의 소규모납세인에 대한 월별(또는 분기별) 증치세 면세 혜택을 법정 과세기준점(즉, 월 판매액 10 만 위안 또는 분기별 판매액 30 만 위안) 제도로 전환했습니다. 건별 납세를 적용하는 소규모납세인의 경우, 과세기준점은 건별(일 기준) 판매액 1,000 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루에 여러 차례의** 과세거래가 발생한 경우, 당일 판매액 총액을 **합산하고** 일 기준으로 과세기준점 표준을 적용하여 분할 거래의 조세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기 소규모납세인 과세기준점 표준은 2026 년 1 월 1 일부터 2027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합니다. 또한, 10 호 공고는 차액과세 납세인이 “관련 대금을 공제한 후의 잔액(세금 제외)”에 따라 과세기준점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과세기준을 통일했습니다.

四、특정한 경우 자연인은 당월 전체 과세거래 판매액으로 과세기준점 계산

4 호 공고는 징수관리 관련 보충 문건으로서, 자연인이 다음과 같은 6 가지 특정 경우가 발생하면 **당월 발생한 전체 과세거래의 판매액**으로 월별 과세의 과세기준점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계산해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자연인이 6 가지 특정 경우가 발생하면 6 가지 경우 이외의 수익을 취득하든 아니든 당월 전체 판매액 기준으로 과세기준점 표준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6 가지 경우 이외의 수익을 제외시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2025 년 8 월 8 일 및 이후 신규 발행된 국채·지방정부채권·금융채권의 이자수익(일시 수령한 이자는 안분하여 월 판매액 결정).

- 부동산 임대(일시 수령한 임대료는 안분하여 월 판매액 결정).
- 인터넷 플랫폼 내 사업종사자가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서비스대가를 수취하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대리 신고하는 경우.
- 폐기 제품의 자연인 판매자가 "계산서 역발행(反向开票)" 방식으로 폐기 제품을 판매하고, 자원회수 기업이 대리 신고하는 경우.
- 보험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회사가 대리 신고하는 경우(증권 중개인, 신용카드 및 관광업 대리인의 경우도 준용).
-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하는 기타의 경우.

五、면세 항목 범위 조정

10 호 공고는 법정 면세 항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기존 정책 규정을 유지하였는데, 일부는 장기적으로 유효하고 일부는 기한내(2027 년말까지 시행) 유효합니다. "영리 미용 의료기관"은 증치세 면세 대상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한부로 시행을 유지하기로 한 정책 중 주목할 만한 점은 "공모형 증권투자펀드(폐쇄형 증권투자펀드, 개방형 증권투자펀드)의 관리인이 펀드를 운용하여 주식·채권을 매매함으로써 취득한 수익"은 기한내 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사모펀드는 면세 범위에서 제외됨**이 명확해졌습니다.

六、3%, 5% 또는 보다 낮은 징수율에 따른 간이과세 규정의 연장

10 호 공고는 일반납세인이 간이과세방법을 적용하여 3% 또는 5% 징수율로 증치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유지했으며, 대부분은 기한부 유지 정책(2027 년말까지 시행)입니다. 여기서:

- "자산관리상품 관리인이 계약형 자산관리상품(契约制资管产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치세 과세대상행위"는 간이과세방법을 선택하여 3%의 징수율로 증치세를 계산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형 자산관리상품(合伙制资管产品)은 제외됨**이 명확해졌습니다.

- 5%의 징수율은 주로 일반납세인의 2016년 4월 30일 영개증(营改增, 영업세 부과를 증치세 부과로 변경) 이전 항목에 대해 적용됩니다. 소수의 특정 사업의 경우 3% 징수율을 좀더 낮은 징수율(2%, 1.5%, 1%)로 경감하여 증치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일반납세인이 제공하는 노무파견용역과 2026년부터 개시하는 신규 갑공(甲供) 공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간이과세방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 일반납세인이 자체 생산한 바이오 제품을 판매 시 간이과세방법에 따라 3%의 징수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관련 정책은 10호 공고에서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 또한, 10호 공고에서는 다음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납세인이 부동산 판매·임대 또는 토지사용권 양도거래 이외의 증치세 과세거래가 발생한 경우, 3% 징수율을 1% 징수율로 경감하여 증치세를 징수한다.” 따라서, 소규모납세인의 부동산 판매·임대 또는 토지사용권 양도거래는 《증치세법》에 근거하여 간이과세방법을 적용해 3%로 증치세를 계산 및 납부할 수 있지만, 1% 징수율로 경감하는 혜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七、차액과세 적용 범위 및 방식 조정

10호 공고는 기한내 차액 계산 정책(2027년말까지 시행)을 명확히 했는데, 이는 금융기관 할인 및 재할인 업무, 중국증권등기결산유한공사 관련 업무, 특정 범위의 금융리스와 금융리스형 판매후 재리스 업무, 간이과세방법 적용 건축 서비스, 일반납세인의 노무파견 서비스와 보안 서비스(《노무파견경영허가증을 취득한 노무파견 회사와 보안서비스허가증을 취득한 보안 서비스 회사에 한함), 관광 서비스, 간이과세를 선택한 2016년 4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사용권의 양도, 간이과세를 선택한 일반납세인의 구 프로젝트 부동산 판매, 소규모납세인의 부동산 판매(자가 건축 제외), 일반과세방법을 적용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개발 프로젝트 판매, 금은보석 교환 판매(以旧换新) 업무를 포함합니다.

12호 공고는 기존의 차액과세 정책을 연장하는 기초하에 8가지 장기 유효한 차액과세 상황의 판매액 계산 방법을 집중적으로 명확히 했는데, 이는 금융상품 양도, 일반납세인의 여객터미널 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 항공운송 판매 대행 서비스(경내/경외 항공 구간), 경외 단위의 경내 시험 대행, 비자 대행, 면세 화물 수입 대행을 포함합니다.

또한, 차액과세 방식을 채택한 각종 업무와 관련하여 10 호 공고는 세금 포함 판매액에서 관련 대금을 공제하는 것에 대해 계산서 발행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으며,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10 호 공고와 12 호 공고는 차액과세 적용 항목에 대해서 항목별로 “공제 가능 대금 범위”, “합법적 유효한 증빙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으며, 각 지역별 시행의 차이를 방지하고 징수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차액과세 방법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인적자원 아웃소싱 서비스에 대한 차액과세 및 간이과세 시행 중단.
- ✓ 소규모납세인의 노무파견 서비스에 대한 차액과세 시행 중단.
- ✓ 부동산 관리서비스로 청구한 수도 요금에 대한 차액과세 시행 중단.
- ✓ 부동산 개발업체가 자체 개발한 일반과세방법 적용 부동산 프로젝트를 판매할 때, 판매액에서 비화폐 형식의 철거 보상 비용을 공제할 수 없음. 또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토지를 양수하고 정부 부문에 토지 대금을 지불한 후,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동 양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토지를 양수한 동 부동산 개발업체가 프로젝트 회사의 존속기간 동안 그 전체 지분을 보유해야만 정부 부문에 지불한 토지 대금을 동 프로젝트 회사가 공제할 수 있음.

주의사항

해당 증치세 보충 문건의 핵심 원칙은 “연장 위주, 개선 보완”입니다. 이는 세수징수관리 규범화, 납세인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감소, 시장 주체의 활력 제고 등 방면에 있어 깊은 현실적 의미를 지닙니다. 납세인 입장에서는 해당 원칙이 정책의 확실성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의 일관성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납세인이 정책 혜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회와 도전이 동반됩니다. 예를 들어,

건별 납세의 과세기준점 인상은 임시 경영자이거나 과세대상 거래가 드물게 발생하는 소규모납세인에게 특히 유리하며, 납세인의 컴플라이언스 비용과 세수 부담을 확실히 줄였습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하루 여러 차례 거래에 대한 일별 합산 과세” 관련 규정은 납세인이 거래를 분할하여 납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세수 규정 준수의 요구도 다소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납세인은 자신이 속한 산업 및 경영과 관련된 정책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보충 문건 발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또는 세수우대혜택 사항 변경과 관련될 경우 최신 규정에 따라 적시에 세무 처리 방식을 조정하고 세무 규정 미준수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기한부 유보한 혜택 정책과 관련하여, 2027 년말이 정책 조정의 주요 시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때 가서 유관 부문은 경제 사회 발전, 산업 발전 방향 및 재정 수지를 결합하여 해당 정책을 다시 평가하고 유지 여부, 적용 범위 조정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납세인은 관련 정책의 연장여부에 대해 면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PwC 는 증치세 관련 법규 현황에 대해 계속해서 주목하고 귀사가 증치세 신규 규정에 대해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찰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주석

1.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법》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237365/content.html>
2.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일반납세인 등기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2026]2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246538/content.html>
3. 《재정부, 세무총국의 구체적인 증치세 과세범위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6]9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47431/content.html>

4. 《재정부, 세무총국의 증치세법 시행 이후 증치세 우대혜택 정책 연계 사항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6]10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47434/content.html>

5. 《국가세무총국의 과세기준점 표준 등 증치세 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2026]4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247426/content.html>

6. 《재정부, 세무총국의 증치세 과세거래 판매액 계산 기준 명확화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6]12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47440/content.html>

7. 《택배 서비스 등 증치세 정책 명확화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5]5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42261/content.html>

CONTACT LIST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21) 2323-3350,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1) 2323-8174, younggi.y.choi@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Newsflash(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新知

中国税务/商务专业服务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6 年 2 月 9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 2026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

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